

#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

교육사회전문위원

#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조례안 및 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2001. 7. 11(수)  
전 문 위 원

□ 전문위원 박범수입니다.

□ 2001년 6월 26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

-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과
- "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 조례안의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먼저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##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은

- 도민의 권리·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를 제정·개정 또는 폐지함에 앞서
-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사전에 예고하여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, 이를 반영함으로써
-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법의 공정성·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
- 행정절차법 제41조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